

의안번호	2212072
의 퇴 인	김도읍 의원
회 답 일	2025.9.22.
추계번호	25C43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1	안 제9조의4(실종아동찾기 운동)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¹⁾ 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음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3항) 제1항에 따른 실종아동찾기 운동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9조의4(실종아동찾기 운동)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하고,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은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 8억 7,600만원),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 공모” 사업에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배정(2025년 기준)하고 있음
 - － “실종아동 찾기 및 예방 홍보 공모” 사업은 1개 기관을 공모·선정(2025년 실종아동찾기협회 선정)하여 연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당 기관은 실종아동등 찾기 홍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표 1]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사업 예산: 2024~2025년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	
	2024년	2025년
실종아동 정보관리 및 정책지원	114	114
실종아동예방 교육 및 홍보	595	595
실종아동 등 가족지원	167	167
합 계	876	876

자료: 보건복지부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은 기업·기관 등에서 사회공헌 성격의 자발적 실종아동 찾기 운동 참여 시 실종가족의 의견, 매체의 적합성 및 홍보 효과성을 검토하고, 실종자 정보 접근 권한을 참여 기업·기관 등에 부여하여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표 2] 실종아동찾기 운동 참여 기업·기관(2024년 기준)

연번	홍보기관	홍보방법	건/회
1	BGF 리테일	CU편의점 POS기에 실종아동 정보 송출(매월 3인)	36명
2	제주개발공사	제주삼다수 QR코드를 통한 실종아동등 정보 홍보	연중
3	코레일유통	샐러드 포장지 및 POS기에 실종아동 정보 홍보	연중
4	파이낸셜 뉴스	실종가족 인터뷰 및 실종아동정보 기사보도	34건
5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화면에 실종아동정보 홍보	연중
6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로 고지서에 실종아동정보 홍보	연중

자료: 아동권리보장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실종아동찾기 운동 참여기관 수 및 기관별 지원금액,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규모 및 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는 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의 범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관별 지원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추계기간 동안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참여할 기관 수를 현 시점에서 파악하기 곤란함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강시온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시온	02-6788-4742	sionkang@nabo.go.kr